

1-1 회사명	
1-2 법인등록번호	
1-3 사업자등록번호(본점)	
1-4 대표자명	
1-5 대표 전화번호	
1-6 주소(우편번호)	
1-7 감사인 지정요청 대상회사	
1-7-1 회사명	
1-7-2 법인등록번호	
1-7-3 사업자등록번호(본점)	
1-7-4 법인과 대상회사와의 관계	

기재상의 주의

- 1-1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법인(신청인)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.
- 1-7-1 감사인 지정요청 대상이 되는 회사명(피신청인)을 기재한다.
- 1-7-4 신청인이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.

2. 입증자료 첨부

(1-7-4에서 “주채권은행”인 경우)	2-1 주채권은행 해당여부 입증자료	
(1-7-4에서 “기관투자자”인 경우)	2-2 기관투자자 해당여부 입증자료	
	2-2-1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주주 활동 수행에 관한 사항	
	2-2-2 주식보유에 관한 사항	
	2-2-3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실시한 행위에 관한 사항	
	2-2-3-1 회계장부와 서류열람 또는 등사 청구	
	2-2-3-2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	
	2-2-4 주식보유 확약에 관한 사항	

기재상의 주의

- 2-1 신청인이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.
- 2-2 신청인이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.
- 2-2-1 신청인이 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”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.(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제1항제1호)
- 2-2-2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.(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제1항제2호)
- 2-2-3-1 신청인이 「상법」 제466조제1항에 따라 회사에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.(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제

1항제3호가목)

- 2-2-3-2 신청인이 「상법」 제3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에게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문서로 제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.(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제1항제3호나목)
- 2-2-4 금융감독원장이 피신청인의 감사인을 지정한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인이 피신청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임을 피신청인에게 확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.(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제1항제4호)

3. 감사인 지정요청 이유